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

1. 위탁개요

- 사업명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사업비 : 657,000천원(2027년 예산안, 국비 50%, 도비 50%)
 - ※ 질병관리청 운영자침 및 국비 연도별 자원예산에 따라 자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 주요사업(위탁사무)
 -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및 생물테러 대비 훈련·지원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자문 등)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신종감염병 등 환자관리, 감염병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기술 또는 경력을 보유한 기관

※ 지원단장(예정자) : 예방의학 또는 감염내과 등 감염병 분야 전문가

○ 위탁조건

- 질병관리청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조직, 인력, 예산 및 회계, 사업내용 등)
- 수탁기관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제출 및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준수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8.(수)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

※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18층

○ 제출서류 :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사·공고

4. 제출서류

- 수량 : 총 11부(원본 1부, 사본10부)
- 규격 : A4사이즈 1권의 책자로 제본(목차, 쪽번호 명시, 좌 편철)
- ※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마스킹 처리)하고, 사본(10부)의 경우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삭제(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연번	내용	비고
1	수탁신청서 1부	서식 1
2	서약서 1부	서식 2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서식 3
4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4
5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1부	서식 5
6	신청기관 역량 (유사 분야 사업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부	서식 6
7	단장(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서 1부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7
8	사업계획 요약서(3페이지 이내) 1부	서식 8
9	사업계획서 1부	서식 9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10
11	사용인감 신고서 1부	서식 11
12	확약서 1부	서식 12
13	위임장 1부	서식 13
14	발표자료 (PPT 파일, USB 저장)	

5.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평가기준 :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 참조(붙임)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중
 -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 당일 사업책임자(또는 위임받은 자)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심사기준

- 정성평가(70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배점
1. 사업 수행능력 (30점)	1-1. 사업 현황분석 및 수탁 목적의 적절성	○ 위탁사무의 추진배경·현황 및 지역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이해도 ○ 수탁 목적과 기관 설립목적·비전의 부합성 ○ 도 감염병 관리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10
	1-2.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사업 추진 능력	○ 단장(예정자)의 전문성(관련 경력·자격) 및 운영 역량 ○ 인력 운영(채용·교육·복무) 및 조직운영 방향의 합리성	10
	1-3. 지원단 특성과 사업의 독창성 및 효과성	○ 기관 고유 역량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 계획 여부 ○ 사업 내용의 창의성 및 타 기관 대비 차별성 ○ 기대효과의 구체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10
2. 사업 계획 적합성 (40점)	2-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위탁사무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여부 ○ 목표 수준의 적정성(과소 또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설정 여부) ○ 목표의 구체성 및 측정 가능성	10
	2-2. 사업추진 방법 및 계획의 적절성	○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 단계별 추진일정의 합리성 ○ 소요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 집행계획	10
	2-3. 성과지표 설정 및 사후관리 방안	○ 사업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산출·결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성과 측정방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체성 ○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개선 등 사후관리 방안	10
	2-4. 도·시군·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성의 적절성	○ 도 및 시군 보건소와의 협력·지원 체계 ○ 의료기관·유관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계획 ○ 감염병 위기상황 시 공조·지원 체계	10

- 정량평가(29점) 및 가·감점(+1~△1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산출기준 및 구간별 점수	배점														
3. 사업 추진역량 (29점)	3-1. 감염병 예방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사업(위탁·용역·연구과제 등) 수행 건수 <table> <tr> <td>구분</td> <td>5건이상</td> <td>4건</td> <td>3건</td> <td>2건</td> <td>1건</td> <td>없음</td> </tr> <tr> <td>점수</td> <td>15</td> <td>12</td> <td>9</td> <td>6</td> <td>3</td> <td>0</td> </tr> </table> ※ 증빙자료 : 계약서, 협약서, 실적증명서 등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점수	15	12	9	6	3	0	15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점수	15	12	9	6	3	0											
	3-2.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실적 (최근 3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참여, 지역보건 향상 활동(교육·캠페인·자문·위원 참여 등) 건수 <table> <tr> <td>구분</td> <td>5건이상</td> <td>4건</td> <td>3건</td> <td>2건</td> <td>1건</td> <td>없음</td> </tr> <tr> <td>점수</td> <td>14</td> <td>11</td> <td>8</td> <td>5</td> <td>2</td> <td>0</td> </tr> </table> ※ 증빙자료 : 참여확인서, 위촉장, 결과보고서 등 ※ 3-1에 반영된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점수	14	11	8	5	2	0	14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점수	14	11	8	5	2	0											
4. 가·감점 (+1 ~ △1점)	4.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 평가 결과	○ 경기도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table> <tr> <td>구분</td> <td>매우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미흡</td> </tr> <tr> <td>점수</td> <td>+1</td> <td>+0.5</td> <td>0</td> <td>△0.5</td> <td>△1</td> </tr> </table> ※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기관은 0점 적용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	+0.5	0	△0.5	△1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	+0.5	0	△0.5	△1												

○ 심사절차 및 방법

- 신청기관은 심사 당일 사업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자(대리인)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신청접수 순으로 운영계획 등 발표(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발표자료는 PPT로 준비하여 10분 이내로 제안설명하고, 10분간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함
- 심사결과 평정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할 때, 사업추진 역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 기타 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6. 수탁기관 결정 및 계약체결

- 결정통지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계약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사항은 경기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현황, 심의내용,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약속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약속 내용은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함. 수탁기관은 약속 사항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신청인은 제반 규정과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제출서류는 목차와 쪽수를 기입하여 1권(A4 규격)으로 편철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고유식별정보는 삭제(마스킹처리)하여 제출하며, 심의본(사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삭제하여 제출함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민간·공공기관위탁 사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문의처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031-8008-5379)